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6. 2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72호로 2023년 5월 2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폐기물 수거 보상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환경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거 보상 관련 조문 신설(안 제34조의2)

나. 「환경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대외직명 변경

(안 제8조제3항제4호 용어변경: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원”)

다. 근거규정이 폐지된 별지 서식 삭제

(현행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4. 20. ~ 5. 10.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폐기물 수거 보상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환경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8조에서는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원’으로 개정하였고,
- 안 제34조의2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자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그밖에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근거 규정이 폐지된 별지 서식을 삭제함.

○ 검토결과

- 2016년 서울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이 “환경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도 2022년 청소 노동의 존중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개정하였음. 이에 맞춰 본 조례안에서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또한 폐기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이 직접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에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